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0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김소희

정희용 • 김기웅 • 권영진

김선교 • 김대식 • 조은희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.

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,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 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3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 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	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
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	등에 대한 감면) ①
호의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위	
기지역"이라 한다)에서 제58조	
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	
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	
지정된 기간 내에 「중소기업	
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	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	
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	
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	
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	
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	
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	
분의 50(100분의 50 범위에서	
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	
그 율)을 경감하고, 2027년 12	
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	
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	
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	

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(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) 을 경감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・③ (생 략)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
기본법」 제48조의2에 따라

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